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무직원 결격사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결격사유 조회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방식 개선(안 제9조)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격자를 관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조문 정비(안 제30조의5)

세무사법 제19조의14가 제19조의15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여 준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함.

다.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명확화(안 제32조)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라.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권한 위탁(안 제34조의2)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함.

마. 결격사유 조회 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4조의3)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부여함.

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안 제36조)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19조의14”를 각각 “법 제19조의15”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를 말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

제34조의3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광고) ① 세무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때에는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하여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연락처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무사등이나 그 사무직원이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2. 평균환급액, 환급액, 절세율 등 그 밖에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하는 내용의 광고
 3. 세무사등이 자기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세무사등이 아닌 사무직원을 세무전문가나 세무사등으로 오인할 수 있게 게시하는 광고
 4.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5. 무료, 최저가 등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광고
- ③ 국세청장은 세무사등이 광고한 내용이 법 제12조의7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사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의견진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

규정, 제34조의2 및 제34조3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	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		
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	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	----- 관		
하여야 한다.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	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	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5----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	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	-----		
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	③ 법 제19조의15-----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신 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조제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	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
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	다.
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	1. · 2. (생 략)
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	<신 설>
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를 말한다.	3. ~ 23. (생 략)
제34조제2(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 략)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③ -----

-----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6조(광고) ① 세무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법인 외국세

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때에는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하여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의 성명(세무법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연락처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무사등이나 그 사무직원이 세무대리의 수입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2. 평균환급액, 환급액, 절세율 등 그 밖에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하는 내용의 광고

3. 세무사등이 자기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세무사등이 아닌 사무직원을 세무전문가나 세무사등으로 오인할 수 있게 게시하는 광고

4.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5. 무료, 최저가 등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광고

③ 국세청장은 세무사등이 광고한 내용이 법 제12조의7을 위반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사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의견진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영팀	
연 락 처	(044) 215 - 4154